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및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에 “대풍지방산업단지”를 “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”에 위탁하도록 함.

□ 의안전문 : 별첨

□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대상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기업지원과	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단지 관리권한에 관한 사항 · 청주지방산업단지 · 현도지방산업단지 · 부용지방산업단지 · 대소지방산업단지 · 대풍지방산업단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부용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대소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대풍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 	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, 제31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【별표】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 사무명	위탁대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 사무명	위탁대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기 업 지원과	6	○산업단지 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			기 업 지원과	6	○산업단지 관리 권한에 관한 사항		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1조
		· 청주지방산업 단지	청주지방산업 단지관리공단	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			· 청주지방산업 단지	청주지방산업 단지관리공단	
		· 현도지방산업 단지	현도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	"			· 현도지방산업 단지	현도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	
		· 부용지방산업 단지	부용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	"			· 부용지방산업 단지	부용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	
		· 대소지방산업 단지	대소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	"			· 대소지방산업 단지	대소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	
		<신 설>					· 대풀지방산업 단지	대풀지방산업 단지입주기업 체협의회	

관계법령 발췌

<지방자치법>

제95조(사무의 위임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무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<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>

제30조(관리권자등)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자원부장관
2. 지방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
3.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리권자
2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
3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
4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

제31조(산업단지관리공단등)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산업단지관리공단(이하 "관리공단"이라 한다)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협의회(이하 "입주기업체협의회"라 한다)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(이하 "관리공단등"이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
2.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
3.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4.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

⑥ 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⑦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무관청"은 "관리권자"로 본다.